

의안번호	2201144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4. 9. 30.
추 계 번호	24A056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3억원(연평균 6.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이 중 지방정부(17개 시·도의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3.6억원(연평균 4.7억원)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중앙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54	—	—	54	—	108	22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544	—	—	544	—	1,088	218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및 제9조)	270	270	270	270	270	1,350	270
— (중앙) 사회적가치위원회	15	15	15	15	15	75	15
— (지방)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안 제11조)	151	151	151	151	151	755	151
합계	1,019	421	421	421	1,019	3,301	66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법 시행 후 1~2회차 기본계획의 경우 3년 단위	의무규정
2	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 (시·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법 시행 후 1~2회차 기본계획의 경우 3년 단위	
3	안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안 제8조 (사회적가치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 30명 이내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	
5	안 제9조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 시·도지사는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 (포상)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기본계획 수립)	○	-
2	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시·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	
3	안 제8조 (사회적가치위원회)	○	
4	안 제9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	
5	안 제11조(포상)	○	
6	안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7	안 제10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제7조 및 제10조의 경우 기존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재정소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동 추계에서 제외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안 부칙 제2조)

-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5년 단위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원(연평균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2] 제정안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노동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47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경상북도	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22	43
주요 기업 사회적 가치 추진 현황 및 정책 지원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	2020	55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8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행정학회	2017	38
평균				54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단, 제정안 부칙 제2조는 동 법 시행 후 1회차 및 2회차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3년주기로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3]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비용	54	-	-	54	-	108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시·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시·도 지역별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0.8억원(연평균 2.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비용은 17개 시·도에서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3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지역별 추진계획 또한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3년 주기 수립을 가정함

[표 4] 최근 수립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사회적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2021~20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0	45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부산광역시	2021	36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2024~2028)	전라남도	2023	36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경기도 안양시	2023	20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2024~2028)	서울시 은평구	2023	22
평균			32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5] 제정안의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비용	544	-	-	544	-	1,088	2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회적가치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500만원(연평균 1,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을 동수로 할 것을 규정. 따라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15인이 될 것으로 가정함
 - (횟수)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될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 민간위원 15인 × 25만원 × 연 4회 = 1,500만원

[표 6] 제정안의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15	15	15	15	15	75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2.8억원(연평균 2.6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
- 제정안은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음. 추계를 위해 제8조 사회적가치위원회와 동일 조건(민간위원 15명, 연 4회 개최, 회의수당 25만원)을 전제로 17개 시·도에 설치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7] 제정안의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6억원(연평균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
- 포상금 지급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포상 및 정부혁신 우수기관 포상에 지급된 비용의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수준인 1.5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8] 제정안과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우수기관 포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205	217	205	205	205	207
정부혁신 우수기관 포상	96	94	106	96	85	95
평균	151	156	156	151	145	151

자료: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9] 제정안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포상금 지급 비용	151	151	151	151	151	755	1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해당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